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를 ‘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제’로 정비하고,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 사유를 보완하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제’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제60조의3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한다.

안 제38조의 제목 중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인증의”를 “지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제1항에 따라 지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물류기업”을 “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안 제39조의 제목 중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을 취소”를 “지정을 취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를 “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심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신청”을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업무”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 중 “인증 기준”을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업무”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지정서와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각각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각각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한다.

안 제42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각각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한다.

안 제57조제3항 중 “이하 “우수 물류신기술””을 “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우수 물류신기술”을 각각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우수 물류신기술”을 각각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한다.

안 제57조의2의 제목 중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물류활동에 적용하거나 물류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안 제66조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서·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지정서 또는 등록증”으로 한다.

안 제68조제3호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한다.

안 제69조제1항제1호 중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한다.

안 제71조제6항제2호 중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인증받은”을 “지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

안 제73조제1항제3호 중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부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인증받은”을 “지정을 받은”으로 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9항, 제11조의2제5항,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받은”을 “지정 받은”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제2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u>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u>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u>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u>물류사업별로</u> 운영할 수 있으며, 각 <u>사업별 인증의</u>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 ----- ----- -----<u>지속가능한</u>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u>물류활동을</u>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u>소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각각</u>----- ----- -----. ② ----- ----- <u>세부 우수분야에 따라</u>----- -----<u>분야별 인증</u>----- ----- -----. ③ · ④ (현행과 같	<u>제2절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u> 제38조(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등) ① ----- ----- ----- ----- ----- ----- -----<u>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지정</u>----- -----. ② -----<u>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u>----- ----- -----<u>지정의</u>----- ----- -----. ③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u>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u>우수물류기업</u> 선정을 위한 <u>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u>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음)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u>인증우수물류기업</u>이 다음 각 호	----- ----- <u>제1항에 따라 지정</u>----- ----- <u>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u>----- ----- ----- ----- ----- ----- -----. ④ ----- <u>우수물류활동기업</u>----- ----- <u>지정의</u>----- ----- <u>지정표시의</u>----- ----- ----- ----- -----. 제39조(<u>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u>의 취소 등) ① ----- -----
---	---	--

여 다른 사람에
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
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
증서를 대여한
때

② 인증우수물류기
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 인
증이 취소된 경우
에는 제41조제1항
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
의 사용을 중지하
여야 한다.

제40조(인증심사대행
기관) ① 국토교통
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은 우수물
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
기업 인증심사 대
행기관(이하 “심사
대행기관”이라 한
다)을 공동으로 지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인증심사대행
기관) (현행과 같
음)

-----지정서
를-----

② 지정우수물류활
동기업은-----
-----우수물류 활동
기업의 지정이-----

-----지
정서를-----
지정표시의-----
-----.

제40조(지정심사대행
기관) ① -----

-----우수물류
활동기업의 지정과
-----우수물
류활동기업 지정심
사-----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u>인증신청</u>의 접수 2.·3. (생략) 4. 그 밖에 <u>인증업무</u>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 ⑤ (생략)		----- ----- -----. 1. <u>지정신청</u>의----- 2.·3. (현행과 같음) 4. -----<u>지정업무</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 지정취소)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 지정취소)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u>인증</u>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u>인증업무</u>를 거부한 경우		2. ----- -----<u>지정</u>----- ----- ----- 3. ----- --<u>지정업무를</u>----- -----
제41조(<u>인증서와 인증마크</u>)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u>인증우수물류기업</u>에 대하여 <u>인증서</u>를 교부하고, <u>인증</u>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u>인증마크</u>”라 한다)를 제정하여 <u>인증우수물류기업</u>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u>인증마크</u>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현행과 같음)	제41조(<u>지정서와 지정표시</u>) ① ----- ----- ----- <u>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u>-----<u>지정서를</u>----- <u>지정을</u>----- -----<u>지정표시</u>----- -----<u>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이</u>----- -----. ② <u>지정표시의</u>----- ----- ----- ----- -----

수산부장관이 공동 으로 정하여 고시 한다.		----- -----.
③ <u>인증우수물류기 업이</u> 아닌 자는 거 짓의 <u>인증마크</u> 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u>인 증우수물류기업임</u> 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u>지정우수물류활 동기업이</u> ----- ----- <u>지정표시</u> 를----- ----- -- <u>지정우수물류 활 동기업임을</u> ----- -----.
<u>제42조(인증우수물류 기업 및 우수녹색물 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u>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 은 <u>인증우수물류기업</u> <u>또는 제60조의3에 따 른 우수녹색물류실천 기업에</u>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u>제42조(인증우수물류 기업에 대한 지원)</u> -- ----- ----- <u>인증우 수물류기업</u> ----- ----- ----- ----- -----.	<u>제42조(지정우수물류 활동기업에 대한 지 원)</u> ----- ----- ----- <u>지정우수물류 활동기 업</u> ----- ----- ----- -----.
<u>제57조(물류 관련 신 기술·기법의 연구개발</u>	<u>제57조(물류 관련 신 기술·기법의 연구개발</u>	<u>제57조(물류 관련 신 기술·기법의 연구개발</u>

<신 설>

류신기술을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이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
설 등에 우선 적용
하거나 구매하여야
한다.

⑥ 우수 물류신기
술을 적용하는 공
사·용역을 발주하
거나 우수 물류신
기술을 적용한 제
품을 구매하는 관
계 행정기관 및 공
공기관 소속 계약
사무담당자 및 설
계 등 공사업무 담
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
으면 해당 기술 적
용 또는 제품 구매
로 인하여 해당 기
관에 발생한 손실
에 대하여는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

물류신기술등-----

-----.

⑥ 우수 물류신기
술등-----

-----우수 물류신
기술등-----

-----.

	<u>법」에 따른 책임</u> <u>은 면제되지 아니</u> <u>한다.</u>	----- -----.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제57조의2(<u>우수 물류</u> <u>신기술의 지정 취</u> <u>소) 국토교통부장관</u> <u>또는 해양수산부장</u> <u>관은 제57조제3항</u> <u>에 따라 지정된 우</u> <u>수 물류신기술이</u> <u>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u> <u>경우에는 그 지정</u> <u>을 취소하여야 한</u> <u>다. <단서 신설></u> 1. <u>거짓이나 그밖의</u> <u>부정한 방법으로</u> <u>지정받은 경우</u> 2. <u>해당 우수 물류</u> <u>신기술의 내용에</u>	제57조의2(<u>우수 물류</u> <u>신기술등의 지정</u> <u>취소) -----</u> ----- ----- ----- <u>우수 물류신기술등</u> ----- ----- ----- <u>그 지</u> <u>정을 취소할 수 있</u> <u>다. 다만, 제1호 및</u> <u>제2호에 해당하는</u> <u>경우에는 그 지정</u> <u>을 취소하여야 한</u> <u>다.</u> 1. (개정안과 같음) 2. <u>해당 우수 물류</u> <u>신기술등의 내용</u>

	<u>중대한 결함이 있어 공사·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u> <u><신 설></u>	<u>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물류활동에 적용하거나 물류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u>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u>인증우수 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 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u>인증우수 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는</u> ----- ----- ----- ----- ----- ----- ----- -----.	3. <u>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u>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u>지정우수 물류활동기업</u>----- ----- ----- ----- ----- -----<u>지정서 또는 등록증</u>----- -----.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68조(청문) ----- ----- -----	제68조(청문) ----- ----- -----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 ----- -.	----- ----- ----- ----- -.
1.2.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u>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u>		3. ----- ---- <u>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u> --- --- <u>지정의</u> -----
4. ~ 7. (생략)		4. ~ 7. (개정안과 같음)
8.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u>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u>	<삭제>	(개정안과 같음)
9. 제60조의8에 따른 <u>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u>	<삭제>	(개정안과 같음)
<신설>		
	10. 제57조의2에 따른 <u>우수물류신기술의 지정취소</u>	10. ----- --- <u>우수물류신기술등</u> ----- --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69조(수수료) ① -- -----	제69조(수수료) ① -- -----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		1. <u>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u>
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u>인증마크</u> 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u>인증받은</u> 기업임을 사칭한 자		2. ----- ----- <u>지정표시</u> 를----- ----- <u>지정받은</u> -----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 ----- ----- -----.	⑦ ----- ----- ----- -----.
1. ~ 1의3. (생략) <u>1의4.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u>	1. ~ 1의3. (현행과 같음) <u><삭 제></u>	1. ~ 1의3.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	2. ----- ----- -----	2. ----- ----- -----

게 하거나 <u>인증서·등록증 또는 지정증</u> 대 여한 자 제73조(과태료)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u>인증마 크를</u> 계속 사용 한 자 4. 제60조의6제2항 을 위반하여 <u>지정 표시를</u> 계속 사용 한 자 5. ~ 8. (생 략) ② (생 략)	-----<u>인증서·</u> <u>등록증</u>----- 제73조(과태료) ① -- ----- ----- ----- -----. 1. ~ 3. (현행과 같 음) <삭 제> 5. ~ 8. (현행과 같 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지정서</u> 또 <u>는 등록증</u>----- ----- 제73조(과태료) ① -- ----- ----- ----- -----. 1.2. (개정안과 같 음) 3. ----- -----<u>지정표</u> <u>시를</u>----- ----- (현행과 같음) 5. ~ 8.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6개</u> <u>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	---	---

제2조(우수 물류신기

술등의 활용 등
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제5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 또는 용역
을 발주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②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
수 물류신기술등
을 활용하는 공
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물류활동기

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

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중 “인증을 받은”을

		<u>“지정을 받은”으로 한다.</u> <u>② 화물자동차 운</u> <u>수사업법 일부를</u> <u>다음과 같이 개</u> <u>정한다.</u> <u>제11조제19항, 제1</u> <u>1조의2제5항, 제34</u> <u>조의4제1항 및 제2</u> <u>항 중 “인증 받은”</u> <u>을 “지정 받은”으로</u> <u>한다.</u>
--	--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4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 의 자 : 서일준 · 이현승 · 김상훈
임종득 · 김소희 · 이철규
서천호 · 정동만 · 신성범
김은혜 · 성일종 · 엄태영
이인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 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물류신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기술 신청·지정·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담당자 면책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신기술의 보급·활용 촉진을 도모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의3제1항 삭제 등).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물류신기술 활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함(안 제5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를 ‘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제’로 정비하고,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 사유를 보완하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제’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제60조의3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류산업”을 “지속가능한 물류산업”으로,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소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각각 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은 세부 우수분야에 따라”로, “사업별 인증”을 “분야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제1항에 따라 지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물류기업”을 “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을 취소”를 “지정을 취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물류사업으로”를 “물류사업 및 활동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를 “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심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신청”을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업무”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 중 “인증 기준”을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증업무”를 “지정업무”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지정서와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각각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각각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

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첨단물류시설등”을 “첨단물류시설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 기존의 물류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매하여야 한다.

⑥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하는 공사·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기술 적용 또는 제품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물류활동에 적용하거나 물류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제60조의3, 제60조의4 및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 중 “인증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업자는”으로, “인증서·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지정서 또는 등록증”으로 한다.

제68조제3호 중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인증의”를 “지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7조의2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

제69조제1항제1호 중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70조 중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을 “임직원은”으로 한다.

제71조제6항제2호 중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인증받은”을 “지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의4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서·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지정서 또는 등록증”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인증마크”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 물류신기술등의 활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인증을 받은”을 “지정을 받은”으로 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9항, 제11조의2제5항,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 받은”을 “지정 받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u>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u>제2절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u> 제38조(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등) ① ----- -----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소관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각각 우수물류활동기업으로 지정-----. ②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은 세부 우수분야에 따라----- -분야별 지정----- -----. ③ ----- -----제1항에 따라 지정-----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 -----. ④ -----우수물류활동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생략)
4.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

기업-----지정-----

-----지정-----

-----.

제39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의

취소 등) ① -----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을 취소-----

-----.

-----지정-----

-----.

1. -----

-----지정-----

2. 물류사업 및 활동으로-----

3. (현행과 같음)

4. -----지정기준-----

5. -----

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u>인증서</u>를 대여한 때 ② <u>인증우수물류기업</u>은 제1항에 따라 <u>우수물류기업의 인증</u>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u>인증서</u>를 반납하고, <u>인증마크</u>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u>지정서</u>----- ② <u>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u>----- -----<u>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u>----- -----<u>지정서</u>----- -----<u>지정표시</u>----- -----.
제40조(<u>인증심사대행기관</u>)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u>우수물류기업의 인증</u>과 관련하여 <u>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u>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u>인증신청</u>의 접수 2. · 3. (생략) 4. 그 밖에 <u>인증업무</u>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 ⑤ (생략)	제40조(<u>지정심사대행기관</u>) ① --- ----- ----<u>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u>----- -----<u>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심사</u>----- ----- -----. 1. <u>지정신청</u>----- 2. · 3. (현행과 같음) 4. -----<u>지정업무</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u>심사대행기관의 지정</u>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u>심사대행기관</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40조의2(<u>심사대행기관의 지정</u> 취소) ----- ----- -----

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
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
를 거부한 경우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
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
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
·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

-----.

-----.

1. (현행과 같음)
2. -----지
정 기준-----
--
3. -----지정업무-----

제41조(지정서와 지정표시) ① --

-----지정우수물류활동
기업-----지정서-----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

② 지정표시-----

-----.

③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표시-----

로 인증우수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활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

제42조(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원) -----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첨단물류시설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

<신 설>

⑤ (생 략)

<신 설>

기술등이 기존의 물류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의 측
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
을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
매하여야 한다.

⑥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
하는 공사·용역을 발주하거나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관계 행정기
관 및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이 없으면 해당 기술 적용
또는 제품 구매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
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7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7조제
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물류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5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신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물류활동에 적용하거나 물류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삭 제>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정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표시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3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증을 반납하고, 지정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

<삭 제>

<삭 제>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2.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3. 제60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지정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삭 제>

<u>지정취소)</u> 국토교통부장관은 <u>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u> 3. <u>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u>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u>인증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u>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업자는-----</u> ----- ----- <u>지정서 또는 등록증-----</u> -----. 제68조(청문) ----- ----- ----- -----
---	--

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
의 신청

② (생략)

제70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벌칙)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임직원은

71조(벌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

 -----지정표시-----
 -----지정받-----
 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3. (생략) <u>1의4.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u> <u>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u> <u>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u> <u>시를 사용한 자</u>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u>인증서·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한 자</u>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u>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u> 4. <u>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u> <u>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u> 5. ~ 8. (생략) ② (생략)	⑦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삭 제></u> 2. ----- ----- -----<u>지정서 또는 등</u> <u>록증</u>----- 제73조(과태료)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u>지</u> <u>정표시</u>----- <u><삭 제></u>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